

사용료 및 수강료 환불 기준

1. 사용료

구 분	사 유	환불내역
부속시설 사 용 료	1. 천재지변, 기타 불가항력의 사유로 시설을 사용하지 못하였을 때	전액 환불
	2. 도서관의 특별한 사정으로 인하여 취소·정지 되었을 때	전액 환불
	3. 부속시설 사용승낙을 받은 자가 사용예정일 3일 이전에 취소를 신청한 때	80% 환불

2. 수강료

구 분		반환사유 발생일	반환금액
문화강좌	수강료 징수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	수강 시작 전 (개강당일은 포함되지 않음)	이미 납부한 수강료 전액
		총 수업일수의 1/3이 지나기 전	이미 납부한 수강료의 2/3 해당액
		총 수업일수의 1/2이 지나기 전	이미 납부한 수강료의 1/2 해당액
		총 수업일수의 1/2이 지난 후	반환하지 아니함
	수강료 징수기간이 1개월 초과인 경우	수강 시작 전 (개강당일은 포함되지 않음)	이미 납부한 수강료 전액
		수강 개시 후	반환사유가 발생한 그 달의 반환 대상 수강료(수강료 징수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에 준하여 산출된 수강료를 말한다)와 나머지 달의 수강료 전액을 합산한 금액
비 고		- 환불신청 당일은 수업일수에 포함 - 1회성 유료 강연은 '수강료 징수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'를 따른다.	